

■ 2026년도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 지원사업 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6년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 지원
- 회의일시 : 2026년 7월 21일(화) 14:00~17:00
- 회의장소 : 예술가의집 영상회의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고윤화, 박우찬, 염혜원, 이나현, 조아라, 최승연

1. 해당사업의 지원취지

'2026년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 지원사업'은 최근 5년 이내(2021~2025) 민간 및 공립 문화예술기관에서 연수단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청년인력을 정규직으로 고용 전환 또는 채용한 경우 1년차(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6개월간 최대 월임금의 50%(상한 120만원), 및 2년차(12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6개월간 최대 월임금의 25%(상한 60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규직 고용전환 지원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문화예술 분야 고용환경을 개선하며, 연수단원 참여 예술인에 대한 지속적인 근무경험 축적 기회 제공으로 전문인력으로서의 경력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심의기준/가중치 및 심의방법

가. 심의기준 및 가중치 설정

신청단체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근로계약 사항'에 대하여 70%, '예술인력 운영현황'에 대하여 30% 비율로 심의하였으며, '근로계약 사항'의 세부 지표는 ① 정규직 전환 여부(25%), ② 보수 수준(25%), ③ 근로계약의 구체성(10%), ④ 근무조건의 적정성(10%)으로 구성하여 평가함.

나. 심의 방법

아래 다섯 가지 지표에 대하여 5개 등급 (A/B/C/D/E)으로 구분하여 6인의 심의위원이 개별 채점하였음.

- ① 정규직 전환 여부 :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근로계약 기간의 존재 여부, 정규직의 법적 정의와 계약서 세부 조항 간 상충 여부 등을 검토하였으며, 사회 보험 취득 여부를 확인하였음.
- ② 보수 수준 :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근로시간 대비 지급되는 임금의 적정 수준을 검토하고 5개 등급으로 나누어 평가함.
- ③ 근로계약의 구체성 : 근로기준법에 따라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만으로 충분히 본인의 근로조건을 인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음.
- ④ 근무조건의 적정성 : 근로계약서에 기반하여 법정 및 약정 근로조건의 운영 여부와 그에 따른 근무 환경 및 복리후생 혜택 제공의 적정성을 심의함.
- ⑤ 예술 인력 운영 현황 : 전환 인력의 경력단계에 비추어 직무 설정 수준이 적절한지, 배치 직무의 중요도 및 경력개발 도움 정도를 심의함.

3. 심의위원회에서 합의된 중점 고려사항 (사업의 특성, 예술계 주요 이슈, 시장 현황 등)

- 가. 정규직 전환 판단 및 보완 승인 기준 : 계약서 내 근로계약 만료 시점의 기재 여부를 최우선으로 확인하였으며,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음을 명시하거나 계약 만료 시점을 정하지 않은 경우 정규직 전환으로 인정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새로 작성하여 기한 내 제출하는 조건부 승인 절차를 적용하기로 합의함.
- 나. 최저임금 및 포괄임금제/수당 검토 : 대다수 단체가 최저임금을 준수하였으나, 포괄임금제라고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지만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시간과 금액을 사전에 정하지 않아 법 위반 소지가 있어 재검토가 필요한 단체가 존재함. 이에 대해 실제 임금명세서 및 근무시간표를 추가 확인하여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하였음.
- 다. 특정 단체 지원금 편중 방지 및 지원 형평성 제고 : 한 단체에서 다수의 인력에 대해 많은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타 문화예술 단체들에게도 공평한 지원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따라 사업 수혜 대상의 확대를 위해 심의위원회 합의를 거쳐 해당 단체의 2년차 근로자의 지원 금액을 일부 조정하여, 절감된 예산으로 더 많은 단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율함.

4. 예산배분 등 심의결과 요약(선정요인, 선정그룹의 공통적인 강점 등)

심의대상 총 55건 65명 신청 중, 적격 요건을 충족한 총 38개 단체, 43명에 대하여 총 242,940,000 원의 지원금을 배분하기로 결정함(조건부 승인 단체는 서류 보완 확인 후 교부 확정). 선정된 단체들은 근로계약의 구체성과 정규직 전환의 진정성이 높게 평가되었으며, 예술인력이 장기적으로 정착하여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복리후생 제도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강점을 보임.

5. 소회 및 당부사항

문화예술 분야의 특성상 정규직 고용 유지가 쉽지 않은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고용전환 장려금 사업을 통해 청년 예술인들에게 지속 가능한 경력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 판단됨. 단기성 채용에 그치지 않고 장기 고용 체계로 정착될 때 예술단체와 예술인 모두 상생할 수 있을 것임.

다만, 공연·전시 일정 등에 따른 가변적 근무 형태에 맞춰 탄력적·선택적 유연근무제를 법적 요건을 갖추어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근로계약서 작성 시 휴게시간 명시 및 포괄임금제 오적용으로 인한 임금체불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인 인사노무 가이드라인 준수와 자체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함.